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국토교통위원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《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》

■ 이언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385호)

2025. 2.

국 토 교 통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박재유

목 차

I . 이언주의원 대표발의(제2205385호)	1
1. 제안경위	1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3. 검토의견	2
가.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 (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)	2

I. 이언주의원 대표발의(제2205385호)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이언주의원 등 10인

나. 발 의 일 : 2024. 11. 8.

다. 회 부 일 : 2024. 11. 1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).

3. 검토의견

가.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(안 제12조제1항제1호
바목 신설)

현행	개정안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	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
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(이하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이라 한다)의 시행을 할 수 없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	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마. (생략)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바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

현행	개정안
1의2. (생략)	<u>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</u>
2. ~ 9. (생략)	1의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⑪ (생략)	2. ~ 9. (현행과 같음)
	② ~ ⑪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, ①개발제한구역의 보전·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, ②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, ③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, ④국방·군사시설 및 교정시설, ⑤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¹⁾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·군

1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제12조(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)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, 공작물의 설치, 토지의 형질변경, 죽목(竹木)의 벌채, 토지의 분할,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·군계획사업(이하 “도시·군계획사업”이라 한다)의 시행을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
 - 가. 공원, 녹지, 실외체육시설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
 - 나. 도로,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(線形)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
 - 다.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
 - 라. 국방·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
 - 마.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·생활편익·생업을 위한 시설

수·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·설치 등의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, 허가 대상의 범위는 시행령²⁾에서 규정하고 있음.

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³⁾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,

보훈회관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,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보훈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임.

2)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

제13조(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) ① **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.**

3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**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**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**대한민국상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, 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**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(相扶相助)하여 자활(自活)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(遺志)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(宣揚)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한편, 현행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시설의 유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, 세부적인 건축물의 종류와 허용되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보훈회관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입법 방안에 대해서도 법체계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보훈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신규입지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은 시행령 개정사항에 해당하며, 2009년 공공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구역 훼손을 방지하고자 입지를 축소·조정한 제도개선⁴⁾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02)6788-5581

4) 공공청사, 국제경기시설, 전문체육시설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문화예술회관 등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었음.